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

2025학년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전남외국어고등학교장

1. 임용

- 가. 임용권자: 전남외국어고등학교장
- 나. 임용절차: 공개 임용
- 다. 임용분야 및 임용 예정인원
: 독일어 1명
- 라.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 다. 계약 기간:
 - 독일어: 2025.07.08. ~ 2026.02.28.
-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마.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 바. 보험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 만 65세

나.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 자
-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해당자
- 6)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기간	2025. 7. 2.(수) ~ 2025. 7. 6.(일) 16:00	- 이메일 제출 (sooki1011@korea.kr)
서류심사	2025. 7. 7.(월) 08:30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심층면접	2025. 7. 7.(월) 13:30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관련교과 수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2025. 7. 7.(월) 16:00 이후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6.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지원서, 자기소개서	원서접수기간	
최종 합격자	1. 교원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2.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채용일 기준 1년) 1부 (또는 건강 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 가능) 4.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또 는 검사결과통보서(유효기간 1년) 1부 5. 잠복결핵 감염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 결과지 사본 1부 6. 자격증 사본(직무 관련 자격증, 원본 지참) 7. 경력증명서(해당자) 8.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0. 근무활동 평가 동의서 1부	학교의 안내에 따름	

※ 단,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될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면제

7.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7일 이내에 붙임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유의 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이 가능하고 반환청구기간 이후의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절차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자 중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바. 최종합격자라 하더라도 결격사유(신원조사 등) 조회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 채용예정자의 계약 포기, 채용 결격 사유 발생,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의 불가 피한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추천하고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외국어고등학교 교무실로(☎ 061-333-1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기간제교원 지원서

※접수번호 :

사진 (3×4cm)	인 명	성	한 글		생년월일		성 별		
		명	한 자						
	적 사 항	현주소	(우편번호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경 력 사 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예시) ○○중학교	2019.03.01 ~ 2019.08.31	교무부	기간제

자 격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채용 공고의 채용의 제한 사유 및 지원 자격을 확인 하였고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응모불가 대상인 채용제한자에 해당여부 조회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계약제교원 채용을 위한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전남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를 참고하여 작성

《작 성 요 령》

- ①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 ② 학력 사항 :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 ③ 경력 사항 :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④ 자격 :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자격을 기재하되,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서식2>

자 기 소 개 서

○ 개조식으로 작성(1쪽 이내)

작성자 :

(서명)

1. 교원으로서 자신만의 장점	
☐ ☐ ☐ ☐ ☐	
2. 학생 인성지도계획	
☐ ☐ ☐ ☐ ☐	
3. 교과학습 지도계획	
☐ ☐ ☐ ☐ ☐	
4. 기타 경력사항	기간제 교원 경력 이외의 사항 기재
☐ ☐ ☐ ☐ ☐	

<서식3> 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남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 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